



1 개관

① 의의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
-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
 - 특히 필요한 경우 외 특별행정심판·특례 신설 × → if 신설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
 - 개별법에서 정함 없는 사항 → 행정심판법 규정 적용

② 이의신청

(1) 의의

- 행정작용을 다투는 자가 통상 그 행정작용을 행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것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 아닌 행정작용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구분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었음

(2)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신청기간 및 제출기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
- 처리기간: 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단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 행정쟁송: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소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일반법: 개별법에서 정함 없는 사항 → 행정기본법 적용(즉 개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됨)
- 적용배제: 공무원 징계, 인권위의 결정, 노동위원회 의결, 형사·행형·보안처분, 외국인, 과태료

구분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심판법	적용 있음	적용 없음
불복 대상	처분	처분(+그 밖의 행정작용)
결정의 성질	행정심판의 재결	-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처분 -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원칙 처분 × / 예외 처분 ○
불가변력	불가변력 인정	불가변력 인정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처분 취소한 사례)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있는 경우만 가능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없는 경우에도 가능 (∴ 내부적 시정절차에 불과) - ex 산재보상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재결 있는 날)부터 기산	행정기본법 제36조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 터 기산

- 이의신청 결과,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처분으로 본 사례
 - 생활대책 대상자 2차 부적격통보, 이주대책 대상자 2차 제외결정

③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이 존재하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 허용됨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국선대리인 제도 존재
- 서류의 송달 ➡ 민사소송법(행정절차법 ×) 중 송달에 관한 규정 준용

2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① 청구인(행정소송의 원고와 동일함)

- 청구인능력: 자연인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관리인) 있는 경우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 가능
- 청구인적격: 법률상 이익 있는 자
-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 ➡ 청구인들 중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 선정 가능
 - 선정대표자 선정시,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 가능
- 지위승계: 당연승계(청구인 사망 또는 법인 합병), 허가승계(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양수인)

② 피청구인(행정소송의 피고와 동일함)

- 피청구인의 경정: 피청구인 잘못 지정 또는 행정청의 권한 승계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
 - 참고 취소소송의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신청에 의해서만 피고경정 가능함
 - 청구기간: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일 기준

③ 관계인(행정소송의 참가인과 동일함)

- 제3자의 참가, 행정청의 참가
 - 신청에 의한 참가
 - 행정심판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참가 → 참가 여부 통지의무 ○(참가 여부 선택 가능)

3 행정심판위원회

①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헌법기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감사원
- 대통령 직속기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인권위원회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ex) 장관, 식약처장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③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 시·도 소속 행정청(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를 의미함)
-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 시·도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
-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직무대행: 상임위원)
- 상임위원: 일반직 공무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비상임위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정조치요구권: 관계 행정기관에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의 개폐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시정조치 요청사실은 법제처장에게 통보)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외의 행정심판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당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직무대행: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아닌 위원을 위원장(비상임)으로 정할 수 있음
- 회의: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두고 있음
-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준용

4 청구요건(행정소송의 소송요건)

① 심판청구의 방식

-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주의: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제출
— if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 보정 요구(경미한 흠: 직권 보정 o)
-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내용'에 따라 판단
— 형식: 진정서 / 내용: 행정심판 ➡ 행정심판청구
— 형식: 행정심판청구서 / 내용: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제출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청
-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 행정청의 조치
 - 10일 내 위원회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송부(청구요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답변서 송부의무 ×)
 - 처분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청구: 처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
 - 불고지 또는 오고지로 인해 심판청구서 잘못 제출: 정당한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송부
 - 직권취소 또는 신청에 따른 처분

② 심판청구기간

-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사유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불변기간
- 처분 **있을** 날로부터 180일(if 정당한 이유 → 180일 후에도 가능)
- 불고지 또는 오고지
 - 불고지: (알았는지 불문하고) 처분 **있을** 날로부터 180일
 - 길게 오고지: 길게 오고지된 기간 내
- 무효등확인심판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③ 대상적격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개별법에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심판청구 ×

5 가구제

① 집행정지(행정소송과의 차이점만 체크)

- 행정소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행정심판: '중대한 손해' (요건이 보다 '완화'되어 있음)
- 위원회의 결정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 생길 우려 → 위원장 직권결정 ○(위원회의 추인 필요)

② 임시처분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 행정소송에서는 인정 ×
-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만 가능

6 심리

① 심리의 범위 및 원칙

- 심리의 원칙: 기본적으로 행정소송과 동일 ➡ 불고불리,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직권심리주의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함
- 위법 여부 + ‘당·부당’ 여부도 심리(합목적성 심사 가능)
- 서면심리주의 또는 구술심리주의
 - But 구술심리 신청 ➡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 해야 함
- 비공개주의(해석상 ○)

② 심리의 절차

- 기본적으로 행정소송과 동일 ➡ 심판청구의 변경, 병합과 분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시(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재결시)

7 조정

- 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직권 ×)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음
- 조정이 공공복리에 부적합 또는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조정 불가
- 조정은 조정서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함
- if 조정 성립 ➡ 재결의 효력이 준용됨(기속력, 직접처분, 간접강제, 재심판청구 금지)

8 재결

① 일반론

(I) 사정재결

- 인정범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포함), 무효확인심판 ×
- 사정판결과의 차이 ➡ 위원회는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음

(2) 인용재결의 종류

- 취소심판: 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적극적 변경 가능), **처분변경명령재결**
-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재결
- 의무이행심판: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

(3) 그 외 재결의 효력

- 재결기간: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
- 참가인 있는 경우: 재결서 '**등본**'을 피청구인을 거쳐 참가인에게 송달
- 처분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청구: 재결서 '**등본**'을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 상대방에게 송달
- 불가쟁력, 불가변력, 형성력(이행재결인 처분변경명령 및 처분명령재결 제외)
- **기판력**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나 법원이 구속되는 것 ×)

② 기속력

- 기본적으로 행정소송과 동일 ➡ 반복금지의무, 재처분의무, 행정청만을 구속
- 위원회의 직접처분
 -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심판)** ➡ 처분 × ➡ 당사자의 **신청** ➡ 명령 ➡ 처분 × ➡ 위원회의 직접처분
 - if 행정청의 처분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경우 포함) ➡ 직접처분 ×
 - 처분의 성질상 직접처분 불가능한 경우(**ex** 정보공개) ➡ 직접처분 ×
 - if 직접처분 ○ ➡ 행정청에 통보 ➡ 행정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의무
- **간접강제**(행정심판법 제50조의2)
 - **간접강제(변경)결정**: 처분성 ○ ➡ 청구인은 행정소송 가능
 -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 (행정소송 제기 여부 불문하고)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 법령에 따라 공고·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변경 ➡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고시

③ 재결에 대한 불복

- **재심판청구의 금지** ➡ 재결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 ×
- 행정청은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소송 제기 ×(∵ 기속력)

9 행정심판의 고지

① 의의

-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 성질: 단순한 사실의 통지 ➡ 비권력적 사실행위
- if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 ➡ 고지제도 배제 ○(∴ 불고지 또는 오고지 특례 적용 ×)
- 직권에 의한 고지: 처분 상대방에 대해서만 고지의무 ○(처분 상대방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
- 요구에 의한 고지: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제3자 등 이해관계인은 고지 요구 가능

② 불고지 또는 오고지

- 불고지하였더라도 처분의 하자를 구성하는 것 아님
- 제출기관의 불고지·오고지: 심판청구서 잘못 제출 ➡ 정당한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송부
- 청구기간 불고지 ➡ 처분 있는 날로부터 180일(처분 알았는지 불문)
- 청구기간 길게 오고지 ➡ 길게 오고지된 기간 내
- 청구기간 짧게 오고지 ➡ 행정심판법상 기간 내 ○

기출 Check

- 0693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 국가 7급 ()
- 0694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20. 지방 ()
- 0695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19. 국가 ()
- 0696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 국가 ()
- 0697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9. 국가 ()
- 0698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8. 국가 ()
- 0699 행정심판의 경우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없다. 12. 지방 ()

정답 & 풀이

- 0693 ○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 0694 × 취소심판의 대상에는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 0695 ○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0696 ×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0697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0698 × 행정심판법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0699 × 행정심판법 제15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0700 피청구인의 경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언제나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20. 지방 7급 ()
- 0701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8. 국가 ()
- 0702 종로구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19. 서울 ()
- 070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5. 지방 ()
- 0704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14. 국가 ()
- 070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지방 ()
- 0706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다. 15. 서울 ()
- 0707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15. 지방 ()
- 0708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지방 ()
- 0709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9. 국가 ()
- 0710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6. 국가 ()
- 0711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성 관계가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14. 지방 ()
- 0712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 지방 ()
- 0713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16. 국가 ()



- 0700 × 행정심판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 0701 ○ 행정심판법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0702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2.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 0703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3.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 0704 ×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국가정보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 0705 ○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 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0706 ○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봄이 옳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2772 판결
- 0707 ×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 0708 ○ 행정심판법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제2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0709 ○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0710 ○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0711 ×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0712 ○ 임시처분에 관해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0713 ○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0714 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10. 국가 ()
- 0715 「행정심판법」상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 12. 지방 7급 ()
- 0716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16. 지방 ()
- 0717 「행정심판법」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서면심리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3. 지방 7급 ()
- 0718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15. 지방 ()
- 0719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15. 사복 ()
- 0720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5. 지방 ()
- 0721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8. 국가 ()
- 0722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완성된다. 20. 지방 7급 ()
- 0723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 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2. 지방 ()
- 0724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1. 지방 ()
- 0725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14. 지방 ()
- 0726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22. 지방 ()
- 0727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23. 지방 ()
- 0728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10. 국가 ()



- 0714 ×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 0715 ○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0716 × 행정심판법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0717 × 행정심판법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 0718 ○ 행정심판법 제29조(청구의 변경)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0719 ○ 행정심판법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0720 ○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 0721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 0722 ×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조정)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0723 × 무효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 0724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달리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도 사정재결이 인정된다.
- 0725 ×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주: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취소명령재결은 포함되지 않음).
- 0726 ○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0727 ×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다른 처분인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변경재결을 할 수 있음).
- 0728 ○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0729**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11. 지방 ()
- 0730**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 재결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19. 국가 ()
- 0731**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21. 지방 ()
- 0732**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는 후에는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22. 지방 ()
- 0733** 조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 22. 군무원 ()
- 0734**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9. 국가 7급 ()
- 0735**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16. 지방 ()
- 0736**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8. 소방간부 ()
- 0737**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19. 지방 ()
- 073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 하여야 한다. 10. 국가 ()
- 0739**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15. 지방 ()
- 0740**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0. 국가 ()
- 074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19. 서울 ()



- 0729 ×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0730 ×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 0731 ×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0732 ×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에는 인용재결의 경우와 달리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도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0733 ○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127 판결
- 0734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0735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 0736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주: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처분의 내용은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
- 0737 × 처분청의 재처분의무는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는 물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당연히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49조 제2항).
- 0738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 0739 ○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0740 ○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3항(주: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0741 ×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0742**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지방 ()
- 0743** 정보공개명령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직접처분의 대상이 된다. 21. 국가 7급 ()
- 0744**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1. 지방 ()
- 0745**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 지방 ()
- 0746**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21. 국가 7급 ()
- 0747**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2. 지방 ()
- 0748**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행정청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3. 지방 ()
- 0749**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16. 지방 ()
- 0750**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22. 지방 ()
- 0751**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15. 서울 ()



- 0742 ○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743 ×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데(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정보공개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설령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위 명령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분의 성질상 직접처분(정보공개처분)을 할 수 없다.
- 0744 × 행정심판법 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제4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0745 ○ 청구인은 위원회의 간접강제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50조의2 제4항).
- 0746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⑤ 간접강제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 0747 × 행정심판법 제51조(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에 따라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 0748 ○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 0749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이른바 불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0750 ×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 0751 ×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이의제출기간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기간보다 짧게 정하였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제출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고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6839 판결